

# 검 토 보 고 서

의안 번호	제145호
----------	-------

2018. 12. 20.

건명	논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주민생활지원과)		
제안 및 제출자	논 산 시 장	제안연월일	2018. 12. 05.
소관위원회	행정자치위원회	회부연월일	2018. 12. 05.

## 보 고 내 용

### □ 제안이유

-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보훈명예수당을 확대 지원을 함으로써 유족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시민들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게 하고자 함.

### □ 주요내용

-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확대(안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)  
: 전몰군경유족⇒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유족, 전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특수임무수행자
- 보훈명예수당 지급액 결정(안 제3조제2항)  
: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족 5만원⇒10만원  
전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특수임무수행자 월 5만원

### □ 검토의견

-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보훈명예수당을 확대 지원을 함으로써 유족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시민들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됨.